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절차 명령 제 19 호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1 년 10 월 28 일

I. 재판 경과

1. 2020 년 1 월 13 일, 중재판정부는 문서제출 관련 당사자들이 분쟁 중인 요청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시하는 절차 명령 제 8 호를 발령하였다.
2. 2020 년 2 월 27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문서제출 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시하는 절차 명령 제 12 호를 발령하였다.
3. 2020 년 6 월 24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문서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한 2020 년 6 월 1 일자 청구인의 신청에 관한 절차 명령 제 14 호를 발령하였다.
4. 2021 년 3 월 22 일, 이재용에 대한 피청구국의 검찰청(이하 “**검찰**”)의 기소(이하 “**검찰 공소장**”)와 관련된 특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비추어, 피청구국은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거나 한국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로 대체됨에 따라 법적 장애가 사라진 6 건의 문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다.
5. 2021 년 9 월 20 일, 중재판정부는 새롭게 확인된 문서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등 2021 년 7 월 14 일자 청구인의 신청에 관한 절차 명령 제 18 호를 발령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신청서 제 46(ii)(a), (b) 및 (c)항과 제 37 항, 제 41 항, 제 43 항 및 제 44 항에 명시된 범주의 문서들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신규 문서제출명령을 발부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해당 문서들이 법원에서 공개되었거나, 문서들의 내용이 요청에 상응하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에 의해 공개된 한에서 수락한다.

6. 2021 년 10 월 13 일, 2021 년 11 월 심리를 준비하기 위한 사건관리회의가 개최되었다. 청구인은 사건관리회의에서 피청구국이 2021 년 10 월 20 일까지 절차 명령 제 18 호에 따라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될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국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청구인이 요구한 문서 18 건 중 14 건과 더불어, 청구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10 건을 이미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청구국은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나머지 4 건의 문서(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절차 명령 제 18 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상응하는 나머지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검찰과 협력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요청에 반대하였다. 당사자들은 절차 명령 제 18 호에 따른 문서제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증거는 2021 년 11 월 3 일까지 중재판정부의 승인 없이 각 당사자의 의해 기록에 추가될 것을 합의하였다.
7. 사건관리회의 이후, 동일 전자우편 상으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i) 2021년 10월 20일까지 절차 명령 제 18호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추가 문서를 제출하고, (ii) 동일한 기한까지 “보관 및 통제하고 있는 모든 제출대상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인, 또는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제출될 수 있는 다른 문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제출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8. 2021 년 10 월 15 일,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전자우편에 답변하며,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2021 년 10 월 13 일자 요청을 기각하고, 특히, 중재판정부가 지시한 당사자들 간의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에 회부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청구인이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청구국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i) 청구인의 부속서에 열거된 문서 1 건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ii) “언론 보도에 기반한 청구인의 요청을 제외하고, 절차 명령 제 18 호에 상응하고 피청구국의 보관 및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부속서에 열거된 문서 3 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9. 2021 년 10 월 16 일, 시간에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10 월 13 일자 요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상으로 전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결정 이유서를 절차 명령의 형태로 발령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II. 중재판정부의 분석 및 결정

10.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요청이 “해당 문서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심리 도중에 [피청구국에 의해] 더 많은 문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한다. 청구인에 따르면, “심리가 시작하기 전에 문서를 수신하는 측이 해당 문서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 기한을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국이 “보관 및 통제하고 있는 모든 제출대상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인, 또는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제출될 수 있는 다른 문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제출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11. 피청구국은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기한 및 확인과 해명을 명령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존재할 수 있는 추가 문서 3 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절차 명령 제 18 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식별되고 피청구국이 보관 및 통제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또한 “문서제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12.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절차 명령 제 18 호에 상응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속적인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피청구국의 의무에 대한 범위와 관련하여서 당사자들 간 입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지한다. 따라서, 피청구국이 검색할 수 있는 나머지 문서들에 대한 제출 기한을 중재판정부가 설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심리 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로만 작용될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숙고한 바, 동 상황에서는 피청구국의 남은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중재판정부는 2021 년 10 월 22 일 금요일이 문서제출 기한으로 적절하다고 여긴다.
13. 피청구국이 보관 및 통제하고 있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인하거나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제출될 수 있는 다른 문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제출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명령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동 요청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타당성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한다. 중재판정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완전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 명령 제 18 호에 따라 이미 다수의 문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문서제출과 관련된 피청구국의 사전 행위 중에는 심리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청구국이 문서제출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바가 없다. 이와 반대로, 피청구국은 2021 년 10 월 15 일자 서한에서 “문서제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두 번째 요청을 기각한다.

14.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피청구국은 2021 년 10 월 22 일 금요일까지 절차 명령 제 18 호에 따라 발견한 추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고,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2021 년 11 월 3 일까지 동 문서들을 기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b) 피청구국은 자신이 보관 및 통제하고 있는 제출대상 문서들이 모두 제출되었음을 확인, 또는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될 수 있는 다른 문서를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제출 지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기각한다;
- (c) 상기 (a)항의 중재판정부의 명령은 문서제출에 대한 피청구국의 지속적인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 (d) 비용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유보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